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)

의안 번호	38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1월 31 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오현정, 김화숙, 이정인,  
송도호, 서운기, 이영실, 홍성룡,  
최정순, 김제리, 이병도, 김생환,  
봉양순, 이은주, 권순선, 채유미,  
문장길 의원 (17명)

## 1. 제안이유

단태아 임신과 달리 다태아 임신시 산모의 유산·사산, 조산, 미숙아 출산 등 신체적·정신적 위험도가 높아지고, 출산 후에도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에 따라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(2013. 5. 30. “다태아 출산휴가 연장·엽산제 등 지원확대”)를 기점으로 2014년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임신·출산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도 그에 따라 2015년에 개정된 바 있음.

다태아 임신·출산시 120일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시의원이 다태아를 임신·출산하는 경우에도 120일간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임신한 여성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함(안 제24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임신 중의 여성위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생략)</p> <p>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 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임신 중의 여성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